

November 15,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9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1. 7. ~ 11. 13.)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바, 매주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 고시

2019. 11. 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최종 고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하향식 관행을 탈피하고자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임. 특히,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추진 예정.

[\[참고자료\] 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의 길 열려](#)



[과기부1]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

2019. 11.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를 발표함. 주요 이슈로는 ① 빅데이터 처리 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법제 개선, ②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등을 위한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에 대한 세액 감면, ③ 업무상 저작물에 창작자 귀속 원칙을 적용하되 기업에 대해 양도추정 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개최](#)



[과기부2] 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2019. 11. 7. 5세대 이동통신(5G) 및 스마트시티 등 융합서비스를 위해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제적 이용현황, 기술발전 동향,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한 주파수 공동사용, ② 신규 이용자에게 혼선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방지 의무 부과, ③ 공동 사용 주파수 대역 발굴에서 선정까지의 절차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참고자료\] 주파수 공동사용 고시 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결과

2019. 11. 7. 범부처 중소기업정책 총괄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과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 ② 아세안 국가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해 기업 교류 및 생태계 협력 강화 등의 방안 마련,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NDA) 도입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기재부1]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 관련

2019. 11. 6.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및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② 중동 등 한류신진지역 대상으로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 확충, ③ 글로벌 쇼핑몰과 지역별 유력 쇼핑몰 입점 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기재부2]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관련

2019. 11. 13.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화학물질 관리 평가 관련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②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범위 확대, ③ 코넥스 상장기업의 클라우드 펀딩 허용, ④ 공공 부문의 신기술 개발지원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9. 11.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익제공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 명확화,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중 자산 상품 용역 거래 관련 별도의 산정기준 마련, ③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개념 구체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 행정예고



[참고자료] 심사지침제정안 전문



[참고자료]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



[산자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관련

2019. 11. 12. ‘2019년 바이오플러스’에서, 3대 신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바이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의 개발 제품화를 전주기 지원, ②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신규 설립, ③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바이오융합산업과 바이오플러스](#)



[금융위] 향후 정책방향 발표

2019. 11. 11. 기존 정책인 전문화 특화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규인가 등의 후속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함. 주요 정책으로는, ①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유도, ③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을 통한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 개선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2019. 11. 11.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 ②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 조성, ③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자료](#)



[\[참고자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및 자문단 명단](#)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현재 정부는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더 유기적으로 작동되어 제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은행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시점이 분실 등의 통지 이전인 경우 해당 접근매체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이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뿐만 아니라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게도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하여 예금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기간을 신용카드업자와 마찬가지로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이전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5G 투자규모에 비해 세제혜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에 시설공사비가 제외되어 그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1-3%p씩 상향하며, 이에 맞추어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한 권리자의 저작물만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또한 저작물의 이용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휴면 권리자가 나타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내지 안 제111조의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인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